

# 「평창군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## 심사 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04월 06일, 이주웅 의원발의
- 회부일자 : 2020년 09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59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0년 09월 11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이주웅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평창군 관내 어린이의 즐겁고 자유로운 놀이문화를 통하여 따뜻한 공동체를 회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안 목적 및 정의 (안 제1~2조)
-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군수의 노력의무 규정(안 제3조)
- 놀이공간의 기능(안 제4조)
- 놀이공간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(안 제5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용섭)

-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한 놀이문화의

확산을 위하여, 읍면별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
안 제3조에서는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군수의 노력의무 규정  
안 제4조에서는 놀이공간의 기능  
안 제5조에서는 놀이공간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지원을  
각각 규정하였습니다.
- 우리군을 비롯하여 “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”가 전국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, “놀이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조례”의 전국적 입법례는 4군데(광주광역시 서구, 울릉군, 대구광역시, 공주시)지자체로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  
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평창군 관내 어린이의 즐겁고 자유로운 놀이문화를 통하여 따뜻한 공동체를 회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어린이놀이시설”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「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설치 또는 관리·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.
2. “공공놀이공간”이란 공원, 학교, 마을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일상적인 놀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의 성격을 띤 아동놀이 공간을 말한다.

**제3조(놀이공간 조성사업)** ① 군수는 어린이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강한 놀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읍면별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양한 계층의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놀이공간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,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에 따른다.

④ 제1항의 경우 「관광진흥법」 제5조,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 또는 「어린이

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2조 등 관련법령이 정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.

#### **제4조(놀이공간의 기능)** 놀이공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어린이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주체적 놀이 공간 제공
2. 놀이 중심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
3.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## **제5조(재정지원 등)**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놀이공간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놀이공간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#### **제6조(다른규정의 준용)**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

#### **제7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